

## 제 14 장

### 정부조달

#### 제14.1조

#####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무역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증진에 기여할 정부조달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제14.2조

#####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정부 목적의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정부조달로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않는 것

- 나. 구매, 리스 그리고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 14.6 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금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고,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용자,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sup>1</sup>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서비스, 또는 용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sup>2</sup>을 포함한 공적 부채와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 활동과 관련된 은행, 금융 또는 특화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적부채 발생, 또는

##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계약 및 관련 조치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

2) 다음과 관련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가) 군대 주둔, 또는

(나) 그러한 협정의 서명국에 의한 사업의 공동 이행, 또는

3)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투자, 또는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 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게 되는 것

4.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되지 않은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4.4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러한 요건에 적용된다.

## 계약가액 산정

5.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으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을 포함한다.
    - 1) 할증료,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 2)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
  
6.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정 최대 총 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 가. 직전 12 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이후 12 개월에 걸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 나. 최초 낙찰 이후 12 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
  
7.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 1) 계약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최대 총 추정 가액, 또는
- 2) 계약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나. 조달의 전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이 장과 달리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제14.3조

####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양 당사국은 제 1 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14.4조

### 일반원칙

####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장과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제한 및 유보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전자적 수단 의 이용

3.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할 때,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 조달의 수행

- 4.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 원산지 규정

- 5.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 대응구매의 금지

- 6.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적용대상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 1 항과 제 2 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4.5조

#####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자국의 조달 법, 규정, 절차 및 정책지침,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모든 변동 또는 추가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 법, 규정, 절차 및 정책지침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답변한다.

#### 제14.6조

##### 공고

#####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 14.11 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 입찰을 위하여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무료로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공표한다.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하나의 창구에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 다.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 라.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
- 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 바.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협상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할지 여부
- 사.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자.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조달기관이 제14.8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요청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

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카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그리고

파.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그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요약공고를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해당 요약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또는 장소

#### 조달계획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 전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최소한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제14.7조

####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상업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이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 제14.8조

###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고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지원에 착수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가능한 범위에서, 등록 및/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 선택입찰

2.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입찰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하여,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도록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 입찰서류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않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모든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3. 입찰서류가 제 2 항가호에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 조달기관은 제 2 항나호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적격 공급자에게 그 서류가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유자격자 명부

4.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매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5.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적격 공급자를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6. 선택입찰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관련 서류를 제 14.9 조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 신청서를 검토한다.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그 공급자를 그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제14.9조

#### 기간

1. 조달기관은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라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 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 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될 수 있다.

3. 제 4 항 및 제 5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다음의 날부터 40 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 3 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 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된 전자 매체에 제 14.6 조제 4 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 일, 그리고 12 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2 차 또는 후속 공고를 공표하는 경우, 또는
-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 3 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 일씩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예정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 다.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이 되도록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7. 이 조의 그 밖의 모든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조달예정공고와 입찰서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조달기관은 또한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8. 부속서 14-가의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14.10조

###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가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 바.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그리고
- 아.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된 그 밖의 요건

3. 조달기관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이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조달기관이 입찰 절차에서 외국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이다.

#### 기술규격

5.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6.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7.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한다.

8.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이 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 수정

11.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정보의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시 참가한 모든 공급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전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수정하여 개정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 제 14.11 조

###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고 제 14.6 조부터 제 14.9 조까지, 제 14.10 조 제 1 항부터 제 14.10 조 제 4 항까지, 제 14.12 조부터 제 14.14 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입찰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 3) “인적 신뢰에 기초한” 서비스 조달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 1)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 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2) 그러한 구분이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관련하여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자. 최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입찰서류 원본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건설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러한 경우, 추가 건설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최초 계약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 1 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또는 보고 시 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 가액, 그리고

다.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 1 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

## 제 14.12 조

### 전자 경매

조달기관은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 제 14.13 조

### 협상

-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가. 그 기관이 제14.6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또는
  -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 2. 조달기관은
  -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마감시한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 제 14.14 조

###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 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최소한 입찰서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그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대하여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4.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계약의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 계약의 낙찰

5.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해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 제14.15조

####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조달기관의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알리며,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다. 조달기관은, 요청에 따라,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을 제공한다.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속서 14-가

에 포함된 양허표에 열거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그 기관이 그 공고를 전자 매체에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 라. 낙찰금액 또는 계약의 낙찰에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 마. 낙찰일 또는 계약일, 그리고
- 바. 사용된 조달방법의 종류 및 제14.11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 가. 제14.11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 제14.16조 정보의 공개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되거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거나,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되거나, 또는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될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에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14.17조

####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모든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공평하고 시기적절하게 검토한다.

3.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4. 각 당사국은 비차별적이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당사국의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문제제기를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접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당국 외의 기구가 이의제기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법원이 아닌 심의기구는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진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의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

나. 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 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기구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가진다.

-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 바. 공급자 이의제기에 관련된 결정 또는 권고는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기적절하게 제공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 나. 심의기구가 이 장의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 제14.18조

####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 1.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조달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나.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정 제안을 통보에 포함한다.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가. 해당 수정이 사소한 개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인 경우, 또는

나. 제안된 수정이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다른 쪽 당사국이

가. 제1항나호에 따라 제안된 조정이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제안된 수정이 제2항가호에 따른 사소한 개정 또는 정정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제안된 수정이 제2항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장(분쟁해결)의 목적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14-가를 수정함으로써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한다.

#### 제14.19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다.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라.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상을 고려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한다.

4. 회합은 필요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 제14.20조 추가 협상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 범위에 대하여 비당사국에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호혜와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 제14.21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각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정부조달 정보 및 관련 전문가 교류
  - 나. 정부조달에 대하여 기술적 표준화의 촉진 및 증진
  - 다. 정부조달제도에서 전자적 통신의 개발 및 이용
  - 라.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하여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 마. 조달 관련 공고를 위한 영어를 포함하여 역량강화 및 조달기회에 대한 다국어 접근의 촉진

#### 제14.22조

#### 소상공인·중소기업<sup>3</sup>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절차에의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을 또한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노력한다.

#### 제14.23조

####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

<sup>3</sup> 에콰도르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자격심사 및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이하 "CPC"라 한다) 중분류 51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조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당사국의 부속서 14-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요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 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

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1)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 부속서 14-가

### 적용범위

####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상품

기준가: 130,000 특별인출권 (이하 “SDR” 이라 한다)

##### 서비스

기준가: 130,000 SDR

##### 건설 서비스

기준가: 5,000,000 SDR

#####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제14.3조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3. 금융감독원
24. 국민권익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주해3)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제14.3조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9. 문화재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특허청
43. 기상청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 해양경찰청(제14.3조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46. 소방청

#### 제1절에 대한 주해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14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조달청이 제1절 및 제2절(한국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9절에 따라 조달가액이 아래의 상응하는 기준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추정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언급된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상품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260,000 SDR 그리고 그 후 130,000 SDR

#####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260,000 SDR 그리고 그 후 130,000 SDR

##### 건설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6,000,000 SDR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 중앙정부

1. 대통령실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2. 부통령실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 국가사무국

1. 국가기획사무국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2. 고등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 사무국 (Secretaría de Educación Superior,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3. 어린이의 영양실조없는 성장을 위한 에콰도르 기술사무국 (Secretaría Técnica Ecuador Crece Sin Desnutrición Infantil)
4. 인권사무국 (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

#### 부처<sup>4</sup>

1. 농림축산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2. 생산통상투자수산부 (Ministerio de Producción, Comercio Exterior, Inversiones y Pesca)
3.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 (Ministerio del Ambiente, Agua y Transición Ecológica)
4. 문화유산부 (Ministerio de Cultura y Patrimonio)
5. 국방부 (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6. 체육부 (Ministerio del Deporte)
7. 도시개발주택부 (Ministerio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

<sup>4</sup> 모든 부처, 그 종속 및 부속 기관, 기관 또는 행정 기관은 제 3 절에 열거된 기관을 제외하고 적용대상이 된다.

8. 경제재정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9. 경제사회통합부 (Ministerio de Inclusión Económica y Social)
10.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11. 국무부 (Ministerio de Gobierno)
12. 외교이민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Movilidad Humana)
13. 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14. 공중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15. 통신 및 정보사회부 (Ministerio de Telecomunicaciones y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16. 교통 및 공공사업부 (Ministerio de Transporte y Obras Públicas)
17. 관광부 (Ministerio de Turismo)
18. 교육부 (Ministerio de Educación)
19. 에너지 및 비재생천연자원부 (Ministerio de Energí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 금융기관

1. 에콰도르 B.P 개발은행 (Banco de Desarrollo del Ecuador B.P)
2. 바네콰도르 B.P (Banecuador B.P)
3. 국가금융공사 (Corporación Financiera Nacional, CFN)
4. 서민연대금융공사 (Corporación Nacional de Finanzas Populares y Solidarias, CONAFIPS)
5. 에콰도르 사회보장연구소 은행 (Banco del 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BIESS)
6. 에콰도르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l Ecuador)

## 그 밖의 기관

1. 국가위기관리대응청 (Servicio Nacional de Gestión de Riesgos y Emergencias)
2. 전략정보센터 (Centro de Inteligencia Estratégica)
3. 국가조달청 (Servicio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SERCOP)
4. 국세청 (Servicio de Rentas Internas, SRI)
5. 에콰도르 관세청 (Servicio Nacional de Aduana del Ecuador, SENA E)
6. 민간항공총국 (Dirección General de Aviación Civil)
7. 시민 등기, 신원 확인 및 인증총국 (Dirección General del Registro Civil, Identificación y Cedulación)
8. 항만청 (Autoridad Portuaria)

## 그 밖의 정부 기관

1. 국회 (Asamblea Nacional)
2.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Judicatura)
3. 선거위원회 (Consejo Nacional Electoral)
4. 헌법재판소 (Corte Constitucional)
5. 시민참여 및 사회규제 위원회 (Consejo de Participación Ciudadana y Control Social)
6. 선거분쟁재판소 (Tribunal Contencioso Electoral)
7. 지방 검찰청 (Fiscalía General del Estado)
8. 국선변호인 (Defensoría Pública)
9. 행정감찰관 (Defensoría del Pueblo)

10.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l Estado)
11. 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l Estado)
12. 우수 고등교육 보장 위원회(Consejo de Aseguramiento de la Calidad de la Educación Superior, CACES)
13. 회사, 증권 및 보험 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mpañías, Valores y Seguros)
14. 서민연대경제감독원(Superintendencia de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
15. 시장지배력규제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ntrol del Poder del Mercado)
16.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17. 통신규제감독청(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 las Telecomunicaciones)
18. 에콰도르 사회보장연구소(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IESS)
19. 물규제감독청(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l Agua)
20. 육군 공병대(Cuerpo de Ingenieros del Ejército)(평시 토목 공사 절차에만 해당)

## 교육기관

1. 벤자민 카리온 에콰도르 문화원(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Benjamín Carrión”)
2. 육군폴리테크닉학교(Escuela Politécnica del Ejército)
3. 국립폴리테크닉학교(Escuela Politécnica Nacional)
4. 마누엘 펠릭스 로페즈 마나비 농업고등폴리테크닉학교(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Agropecuaria de Manabí “Manuel Félix López” )
5. 침보라소 고등폴리테크닉학교(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del Chimborazo)
6. 리토랄 고등폴리테크닉학교(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del Litoral)
7. 에콰도르 농업대학교(Universidad Agraria del Ecuador)

8. 에콰도르 센트럴대학교 (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9. 과야킬 대학교 (Universidad de Guayaquil)
10. 아마존 주립대학교 (Universidad Estatal Amazónica)
11. 볼리바르 주립대학교 (Universidad Estatal de Bolívar)
12. 쿠엥카 대학교 (Universidad de Cuenca)
13. 밀라그로 주립대학교 (Universidad Estatal de Milagro)
14. 마나비 남부 주립대학교 (Universidad Estatal del Sur de Manabí)
15. 산타엘레나반도 주립대학교 (Universidad Estatal Península de Santa Elena)
16. 마나비 라이카 엘로이 알파로 대학교 (Universidad Laica Eloy Alfaro de Manabí)
17. 침보라소 국립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de Chimborazo)
18. 로하 국립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de Loja)
19. 카르치 주립폴리테크닉대학교 (Universidad Politécnica Estatal del Carchi)
20. 암바토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 Ambato)
21. 바바호요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 Babahoyo)
22. 코토팍시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 Cotopaxi)
23. 마찰라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 Machala)
24. 마나비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 Manabí)
25. 퀘베도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 Quevedo)
26. 북부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del Norte)
27. 에스메랄다스 루이스 바르가스 토레스 기술대학교 (Universidad Técnica Luis Vargas Torres de Esmeraldas)
28. 고등국립연구소 (Instituto de Altos Estudios Nacionales, IAEN)
29. 야차이 실험기술연구대학교 (Universidad de Investigación de Tecnología Experimental Yachay)

## 제1절에 대한 주해

이 협정의 제14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국무부(Ministerio de Gobierno),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및 전략정보센터(Centro de Inteligencia Estratégica): 국방 및 공공안전에 필요한 전략적 성격의 상품 조달 및 삼군합동사령부(Comando Conjunto de las Fuerzas Armadas), 육군(Ejército Nacional), 해군(Armada Nacional), 에콰도르 공군(Fuerza Aérea Ecuatoriana) 및 경찰(Policía Nacional)을 위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 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
2. 경제사회통합부, 도시개발주택부, 교육부 및 이들에 종속 또는 부속되거나 조정되는 기구, 기관 또는 행정기관: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을 위한 서비스, 교육 자료의 초안 작성, 디자인, 인쇄, 편집 및 출판과 교복 구매
3. 경제사회통합부 및 이에 종속 또는 부속되거나 조정되는 기구, 기관 또는 행정기관: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 제품)에 규정된 제품의 조달
4. 농림축산부,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및 이들에 종속 또는 부속되거나 조정되는 기구, 기관 또는 행정기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식량 원조와 관련된 식료품, 농업 투입물 및 살아있는 동물의 조달
5. 선거위원회 : 선거 및 공공 협의의 준비 및 조직을 위한 조달

## 제2절 지방정부기관

###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상품

기준가: 200,000 SDR 그룹 A

400,000 SDR 그룹 B

#### 서비스

기준가: 200,000 SDR 그룹 A

400,000 SDR 그룹 B

#### 건설 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 지방정부기관

##### 1. 그룹 A

- 1.1. 서울특별시
- 1.2. 부산광역시
- 1.3. 대구광역시
- 1.4. 인천광역시
- 1.5. 광주광역시
- 1.6. 대전광역시
- 1.7. 울산광역시
- 1.8. 경기도
- 1.9. 강원도
- 1.10. 충청북도
- 1.11. 충청남도
- 1.12. 전라북도
- 1.13. 전라남도
- 1.14. 경상북도
- 1.15. 경상남도
- 1.16. 제주특별자치도

## 2. 그룹 B

- 2.1. 서울특별시 내 지방정부
  - 2.1.1. 종로구
  - 2.1.2. 중구
  - 2.1.3. 용산구
  - 2.1.4. 성동구
  - 2.1.5. 광진구

- 2.1.6. 동대문구
- 2.1.7. 중랑구
- 2.1.8. 성북구
- 2.1.9. 강북구
- 2.1.10. 도봉구
- 2.1.11. 노원구
- 2.1.12. 은평구
- 2.1.13. 서대문구
- 2.1.14. 마포구
- 2.1.15. 양천구
- 2.1.16. 강서구
- 2.1.17. 구로구
- 2.1.18. 금천구
- 2.1.19. 영등포구
- 2.1.20. 동작구
- 2.1.21. 관악구
- 2.1.22. 서초구
- 2.1.23. 강남구
- 2.1.24. 송파구
- 2.1.25. 강동구

2.2. 부산광역시 내 지방정부

- 2.2.1. 중구
- 2.2.2. 서구
- 2.2.3. 동구
- 2.2.4. 영도구

- 2.2.5. 부산진구
- 2.2.6. 동래구
- 2.2.7. 남구
- 2.2.8. 북구
- 2.2.9. 해운대구
- 2.2.10. 사하구
- 2.2.11. 금정구
- 2.2.12. 강서구
- 2.2.13. 연제구
- 2.2.14. 수영구
- 2.2.15. 사상구
- 2.2.16. 기장군
- 2.3. 인천광역시 내 지방정부
  - 2.3.1. 중구
  - 2.3.2. 동구
  - 2.3.3. 미추홀구
  - 2.3.4. 연수구
  - 2.3.5. 남동구
  - 2.3.6. 부평구
  - 2.3.7. 계양구
  - 2.3.8. 서구
  - 2.3.9. 강화군
  - 2.3.10. 옹진군

제2절에 대한 주해

1. 위의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14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9절에 따라 조달가액이 아래의 상응하는 기준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추정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언급된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상품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350,000 SDR 그리고 그 후 200,000 SDR

###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350,000 SDR 그리고 그 후 200,000 SDR

### 건설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6,000,000 SDR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 지방정부기관

모든 지방자치정부(Gobiernos Autónomos Provinciales)를 포함한다.

모든 도시자치정부(Gobiernos Autónomos Municipales )를 포함한다.

제2절에 대한 주해

이 협정의 제14장은 교구자치정부(the Gobiernos Autónomos Parroquiales)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절

#### 그 밖의 기관

#####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상품

기준가: 400,000 SDR

##### 서비스

기준가: 400,000 SDR

##### 건설 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 그 밖의 기관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번호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의 구매는 제외함)(주해3)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주해3)
17. 한국철도공사

#### 제3절에 대한 주해

1. 제14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4장은 조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계약에 부수적인 운송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4장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NS/W/120	CPC 코드	설명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1.B.	84	컴퓨터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F.e.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m.	8675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6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적인 수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2.C.	7523	통신 서비스(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9절에 따라 조달가액이 아래의 상응하는 기준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추정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열거된 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4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6,000,000 SDR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조달기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제14장은 아래에 열거된 공공사업체에 적용된다.

**A. 행정부의 공공사업체**

1. 에콰도르 해군조선소(Astilleros Navales Ecuatorianos-ASTINAVE EP)
2. 에콰도르 전기공사(Corporación Eléctrica del Ecuador-CELEC EP)
3. 통신공사(Corporació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CNT EP)
4. 광산공사(Empresa Nacional Minera-ENAMI EP)
5.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Empresa Pública de Hidrocarburos del Ecuador EP-PETROECUADOR)
6. 혁신마케팅공사(Empresa Pública de Innovación y Comercialización INVENTIO-ESPOL EP)
7. 에콰도르 석유공사(Empresa Pública Flota Petrolera Ecuatoriana-EP FLOPEC)
8. 에콰도르 해상 운송(Transportes Navieros Ecuatorianos)
9. 전력공사(Empresa Eléctrica Pública Estratégica Corporación Nacional de Electricidad-CNEL EP)
10. 암바토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Ambato Regional Centro Norte S.A.)
11. 리오밤바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iobamba)
12. 코토팍시지방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Provincial Cotopaxi S.A. ELEPCOSA)
13. 북부지역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egional Norte S.A.)
14. 남부지역 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egional del Sur S.A.)
15. 중남부지역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egional Centro Sur C.A.)
16. 아조게스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Azogues C.A.)
17. 히드로미라 카르치(Hidromira Carchi EP)
18. 공항서비스 및 경제자유구역·특별제도 관리 도시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Servicios Aeroportuarios y Gestión de Zonas Francas y Regímenes Especiales)

19. 과야킬공항당국(Autoridad Aeroportuaria de Guayaquil)
20. 도시청소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Aseo)
21. 도시교통·공공사업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Movilidad y Obras Pública)
22. 도시식수·위생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23. 암바토식수·하수도시립공사(Empres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de Ambato)
24. 푸질리식수·하수도시립공사(Empresa Públic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de Pujili)
25. 리오밤바식수·하수도시립공사(Empres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de Riobamba EP-EMAPAR)
26. 페드로몬카요칸톤식수·기본위생시립공사(Empresa Públic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del Cantón Pedro Moncayo-EMASA-PM)
27. 쿠엥카청소시립공사(Empresa Municipal de Aseo de Cuenca)
28. 과야킬전기공사(Empresa Eléctrica Pública de Guayaquil EP)
29. 에콰도르 우편서비스공사(Empresa Pública Servicios Postales del Ecuador SPE EP)
30. 코카코도싱클레어수력발전소(Hidroeléctrica Coca Codo Sinclair-COCASINCLAIR EP)
31. 리토랄수력발전소(Hidroeléctrica del Litoral-HIDROLITORAL EP)
32. 히드로에스폴(HIDROESPOL EP)
33. 공공부문부동산관리청(Servicio de Gestión Inmobiliaria del Sector Público-INMOBILIAR)
34. 에콰도르 통신공사(Empresa Pública de Comunicación del Ecuador-

COMUNICA EP)

35. 히드로아고얀(Hidroagoyán S.A.)

제3절에 대한 주해

아래 열거된 기관에 대하여, 승계기관이 설립된 경우, 그 기관은 제3절의 적용대상이다.

1. 에콰도르 시멘트공사(Empresa Pública Cementera del Ecuador EP1)
2. 에콰도르 전략개발공사(Empresa Pública de Desarrollo Estratégico Ecuador — ESTRATEGICO EP)
3. 에콰도르 타메항공공사(Empresa Pública TAME Línea Aérea del Ecuador— TAME EP)
4. 의약품공사(Empresa Pública de Fármacos ENFARMA EP)
5. 에콰도르 철도공사(Ferrocarriles del Ecuador Empresa Pública—FEEP)
6. 야차이 EP(Yachay EP)
7. 에콰도르 제조공사(Fabricamos Ecuador EP)
8. 국가비축본부(Unidad Nacional de Almacenamiento EP)
9. 교통기술공사(Empresa Pública Técnica Vehicular)

## 제4절

### 상품

#### 가. 한국 양허표

1. 제14장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 조달에 적용된다.

2.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한 조달의 경우, 제14장은 다음의 군급번호(FSC) 분류품목에만 적용된다.

FSC	참조번호	설명
1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3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4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5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6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7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8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9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10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부수품
11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12	3416	선반
13	3417	절삭기
14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15	4110	냉장장비

16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17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18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19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20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21	5530	합판 및 단판
22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23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24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25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26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용
27	6505	약품 및 생물체제
28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29	6840	살충소독제
30	6850	각종 특수화학물
31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32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33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34	7350	식탁용 식기
35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36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37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38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39	8110	드럼 및 깡통
40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41	9310	종이와 판지

##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 각각의 주해 및 제7절의 추가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4절에 대한 주해

이 협정의 제14장은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조달 또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의 다음 분류 내 상품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중분류 12 원유 및 천연가스
2. 소분류 333 석유
3. 소분류 334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4. 소분류 341 기초 유기화학물

## 제5절

### 서비스

#### 가. 한국 양허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된다.

GNS/W/120	CPC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1.B.d.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15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한정함)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 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함)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 부수 서비스(공중 소화 및 병해충 방제는 제외함)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1.F.t.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함)
2.D.e.	-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는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9.B	7471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함)
11.A.b.	7212*	카보타지는 제외한 국제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카보타지는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11.H.c	748*	<p>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대리업 서비스</li> <li>-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li> <li>- 해운중개 서비스</li> <li>- 항공화물 운송 대리업 서비스</li> <li>- 통관 서비스</li> </ul>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제5절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 을 가리킨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에 따라 적시되고, 제1절, 제2절 및 제3절 각각의 주해 및 제7절의 추가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대상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참조번호
도로운송서비스	712,744, 87304
해상운송서비스	721, 745
철도운송서비스	711, 743
파이프라인 운송	713
내륙수상운송	722
통신서비스	752, 7512, 754
유지 및 보수 서비스	633, 6122, 886, 6112
호텔	641, 643
전기공급서비스 및 본관을 통한 가스공급서비스	691
항공 운송 서비스	73, 746 [세분류 7321(항공우편운송) 그리고 7462(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외]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741,742,748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7471
보험 및 연금기금에 대한 부수 서비스	814
운영자만 동반하지 않는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83106, 83107, 83108, 83109
개인 및 가정 물품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83202, 83203, 83204, 83209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841, 843, 844, 845, 849

부기서비스	8622
세무서비스	863
시장조사서비스	86401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	866 [세세분류 86602(중재 및 조정서비스) 제외]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8673(15년 후)
광고서비스	871(10년 후)
건물청소서비스 및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서비스	874, 822
농업,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어업 부수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제조업 부수 서비스(기계류 및 기기와 같은 금속제품의 제조는 제외)	881, 882, 883, 884
포장서비스, 인쇄 및 출판서비스	876, 88442
그 밖의 사업서비스	8790 (87901, 87902 제외)
수의서비스	932
환경 서비스: 배기가스정화서비스, 소음저감서비스,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9404, 9405, 9406, 9409

## 제6절

### 건설 서비스

####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의 주해와 제7절을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6절에 대한 주해

제14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의 주해와 제7절을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고 이 부속서에 명시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의 중분류 51에 포함된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대분류 5			건설업 및 건설: 토지
중분류 51			건설업
511			건설 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
	5111	51110	현장 조사 작업
	5112	51120	철거작업
	5113	51130	현장 조성 및 정리 작업
	5114	51140	채굴 및 땅 고르기 작업
	5115	51150	광업용 부지 조성 작업(F042에 분류된 석유 및 가스 추출용 제외)
	5116	51160	비계작업
512			빌딩관련 건설업
	5121	51210	1가구 및 2가구 주택용
	5122	51220	다가구 주택용
	5123	51230	창고 및 산업 건물용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5124	51240	상업 건물용
	5125	51250	공공위락 건물용
	5126	51260	호텔, 레스토랑 및 이와 유사한 건물용
	5127	51270	교육 건물용
	5128	51280	보건 건물용
	5129	51290	그 밖의 건물용
513			토목 건축공사
	5131	51310	고속도로(고가도로 제외), 도로, 거리, 철도 및 비행장 활주로용
	5132	51320	교량, 고가도로, 터널 및 지하철용
	5133	51330	수로, 항만, 댐 및 그 밖의 수상공사
	5134	51340	장거리 파이프라인, 통신 및 송전선(케이블)용
	5135	51350	로컬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보조 작업용
	5136	51360	광업용 건설용
	513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건설용
		51371	경기장 및 운동장용
		51372	그 밖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설치작업(예,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5138	51380	준설서비스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5139	513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용
514	5140	51400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
515			전문건설공사
	5151	51510	말뚝박기를 포함한 기초공사
	5152	51520	급수관정
	5153	51530	지붕 및 방수공사
	5154	51540	콘크리트공사
	5155	51550	용접을 포함한 철골공사
	5156	51560	석조공사
	5159	51590	그 밖의 전문건설공사
516			설치작업
	5161	51610	난방, 환기 및 공조공사
	5162	51620	물 배관 및 배수공사
	5163	51630	가스장치공사
	5164		전기작업
		51641	전기배선작업
		51642	화재경보기공사
		51643	도난경보기공사
		51644	안테나공사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51649	그 밖의 전기공사
	5165	51650	보온공사(전기배선, 물, 열, 소리)
	5166	51660	울타리 및 철책공사
	5169		그 밖의 설치작업
		51691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공사
		51699	그 밖의 설치작업
517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5171	51710	유리작업 및 창유리 설치작업
	5172	51720	미장작업
	5173	51730	도장작업
	5174	51740	바닥 및 벽 타일작업
	5175	51750	그 밖의 바닥깔기, 벽면마감 및 도배작업
	5176	51760	나무 및 금속 창호공사 및 목공사
	5177	51770	실내장식공사
	5178	51780	장식공사
	5179	51790	그 밖의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518	5180	51800	운영자를 동반하는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건설 또는 해체용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

## 제6절에 대한 주해

에콰도르의 조달기관은 도로 및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 또는 재건을 위한 건설 서비스를 조달할 때, 비도시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역의 현지 인력 고용과 관련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절  
추가 주해

가. 한국 양허표

1. 제14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제14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1. 이 협정의 제14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국방 및 공공안전을 위하여 전략적인 삼군(Fuerzas Armadas), 경찰(Policía Nacional) 또는 전략정보센터(Centro de Inteligencia Estratégica)에 의한 국방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또는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을 위하여 유보된 공공조달 프로그램 또는 절차. 다만,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여겨지기 위하여 요구되는 동일한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의 조달

라. 갈라파고스에 소재한 공공분야 기관에 의한 조달 또는 그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

마. 에콰도르공화국 외국 공관의 그 운영을 위한 상품, 서비스 또는 건설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또는

바. 에콰도르 기관의 다른 에콰도르 기관으로부터의 조달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은 에콰도르 국가조달청(Servicio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SERCOP)이 정의한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된 기술 세분화<sup>5</sup> 연구에 따른 국산 재료의 포함을 위한 의무 요건을 정부 조달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조달 계약의 낙찰을 위한 입찰 절차 참가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조건의 형태를 취한다.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에 국산 재료 조건의 존재를 기재하고 계약 문서에 이를 상세히 명시한다. 그러한 조건은 상품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 절차에만 적용되고 전체 계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에콰도르가 공급자에게 계약서 서명 시점에 에콰도르에 주소와 법적 대리인을 둘 것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요건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을 따른다.<sup>6</sup> 에콰도르가 이 협정의 비당사자 또는 비당사인 공급자에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혜택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으로 확대된다.

---

<sup>5</sup>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기술 세분화란 국가공공조달시스템 기본법(Ley Orgá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의 제 6 조제 10 항에 포함된 정의에 따라, 계약 전 단계에서 계약기관이 당사국의 기술 및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조달 및 그 구성요소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관련 국가 당국이 규정한 법률 및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한 세부 연구를 말한다. 이 절차는 상품 및 건설서비스의 국내공급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기관의 영향력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술 세분화 요건은 입찰서류에 포함된다.

<sup>6</sup> 주소의 경우, 에콰도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1999 년 11 월 5 일부터 관보 제 312 호에 공표된 에콰도르 회사법 제 6 조 및 제 415 조와 그 후속 수정 사항에 따른 공공사업의 수행, 공공 서비스의 제공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 에콰도르는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정주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제8절  
공표수단

한국

법률 및 법제: 조달청 [www.pps.go.kr](http://www.pps.go.kr)

조달기회: 나라장터 [www.koneps.go.kr](http://www.koneps.go.kr)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관보

조달공고: 에콰도르의 조달 사이트

<http://www.compraspublicas.gob.ec> 및/또는 모든 적용대상기관의 공식 웹페이지

## 제9절 기준가액 및 가액산정

### 기준가

1.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율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환산율은 한국 원화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로 표시한 한국 원화의 일일 가치 평균에 기초한다. 자국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2년 동안 고정된다.
2. 에콰도르는 자국의 국립은행 환산율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환산율은 개정전 8월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한 24개월 동안의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한 SDR의 일일 가치 평균에 기초하고,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기준가는 이 협정의 발효 직후 짝수 해부터 2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각 조정은 1월 1일에 발효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가가 발효되기 전에 각국의 통화로 이용 가능한 새롭게 계산한 기준가액을 공개한다.
4. 당사국은 자국 통화로 된 기준가액을 다음과 같이 버틸 수 있다.
  - 가.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백만원 아래, 그리고 건설 서비스는 일천만원 아래,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천달러 아래

## 제10절

### 건설·운영·이전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

#### 건설·운영·이전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칙

1. 건설·운영·이전 계약은 가액이 5,000,000 SDR 이상으로 제1절에 열거된 한국의 기관이 낙찰하는 경우 그리고 가액이 15,000,000 SDR 이상으로 제2절에 열거된 기관이 낙찰하는 경우, 제14.2조제1항부터 제14.2조제3항까지, 제14.3조제1항부터 제14.3조제3항까지, 제14.4조제1항, 제14.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14.8조제3항까지 그리고 제14.17조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공공사업 실시 계약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가액이 6,000,000 SDR 이상,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이상으로 제1절 및 제2절에 열거된 에콰도르의 기관이 낙찰하는 경우, 제14.2조제1항부터 제14.2조제3항까지, 제14.3조제1항부터 제14.3조제3항까지, 제14.4조제1항, 제14.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14.8조제3항까지 그리고 제14.17조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규정 외에, 실시 계약 또는 건설·운영·이전 계약에 대한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은 이에 따라 적용된다.